

공무직 운영관리원(미화) 직무기술서

NCS 분류체계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
	11. 경비·청소	02. 청소·세탁	01. 청소	01. 환경미화
중점사업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 대응 · 환경오염방지 ·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연구 개발 · 지원 · 폐기물의 발생억제·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사업 · 환경기초시설(상하수도시설, 폐기물처리시설, 환경에너지시설, 산업폐수, 가축분뇨처리 시설, 완충저류시설) 설치, 공사 및 유지관리 ·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검사 · 분석, 유해성 시험 · 평가 관리 · 대기 · 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 운영 ·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지원사업 			
직무수행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소계획수립에 의거하여 청소준비, 청소활동 전개, 청소활동 마무리 등 수행 · 청소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운용 매뉴얼에 따라 청소대상물에 적합한 장비 선정, 운용, 관리활동을 수행 			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소대상물에 대한 지식 · 청소범위 요소에 대한 지식 · 청소활동 프로세스 · 내·외부 청소영향요소에 대한 지식 · 청소활동과정에 대한 정보 · 청소활동 점검요소 파악능력 			
필요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마감재별 청소방법 · 분석력 · 영향요소 분석기법 · 주의점별 대응방법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운행장비 시스템 확인 기술 · 장비 운전능력 · 장비 정비능력 · 장비 비상상황 대처능력 	
직무수행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고객지향적 사고 · 적극적인 경청자세 · 협력적 관계유지 태도 · 청소작업자와의 친밀감 유지 ·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자세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성실성 · 정확성 · 안전의식 · 협력적 사고 	
직업기초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대인관계능력, 기술능력, 직업윤리 			
지원요건 및 우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원요건 및 우대사항은 공고문 참고 			
참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www.ncs.go.kr · 위 직무기술서는 한국환경공단 채용직렬과 관련된 대표적 NCS를 일부 선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공단의 주요사업 변경 등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			

공단 인사규정 제16조 결격사유

제1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
채용직원 가점적용 세부내용

□ 법정가점

구 분	가 점	비 고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(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5% 또는 10%)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	

*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
※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인원 4명 이상 직렬에 한하여 가점 적용(단, 모집인원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)

□ 특별가점

구 분	가 점	비 고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	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3% 또는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	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5%	

* (의사상자 및 유가족) 의사상자 증명서, 유족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의상자(본인), 의사자의 배우자·자녀는 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5% 부여, 의상자의 배우자·자녀는 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3% 부여

* (장애인) 장애인증명서. 단, 국가유공자(지원공상군경 및 지원공상공무원 포함)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 가점을 적용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유공자증,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상이등급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장애인 특별가점 적용 가능

(※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만 제출할 경우, 상이 등급 확인이 불가하므로, 반드시 상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도 제출)

□ 고령자·준고령자

구 분	가 점	비 고
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고령자(만 55세 이상) 및 준고령자(만 50세 이상 55세 미만)	서류·면접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* 미화/상담은 동법 제16조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임		

* 주민등록초본(주민번호 뒷자리 및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면접전형시 제출)

□ 저소득층

구 분	가점	비고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주거, 교육,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)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		

* 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지원기간 명시) 등

□ 북한이탈주민

구 분	가점	비고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
*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
□ 다문화 가정 자녀

구 분	가점	비고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 자녀이며,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사람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
* ①가족관계증명서, ②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, ③부 또는 모(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 표시), 혹은 부 또는 모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

□ 경력단절여성

구 분	가점	비고
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공고시작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여성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
* 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(여성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중 첫 번째 숫자는 블라인드 처리하지 말 것), ②경력단절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: 임신확인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전문의의 의사소견서(진단서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외 경력단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※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, 15일 미만은 버림

□ 자립준비청년

구 분	가점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(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 ▪ 임용일 기준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, 군필자의 경우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(증빙서류 제출 필요) 	서류전형 만점의 5%	증빙서류* 제출자에 한함

*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수당수급자 확인서 등

- (가점 계산 방법) 가점 항목별(법정가점, 특별가점 등) 가점은 합산이 가능하며 최대 15% 내에서 적용(항목 내 합산은 불가),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서만 가점 적용함
- (증빙서류) 반드시 발급기관에서 발행해 주는 증명서 등을 원본으로 제출